공무국외출장 규정

제정 2012. 8.22 개정 2013. 3.29 시행 2013. 3.29 개정 2021. 2.24 시행 2021. 2.25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 임 직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.
- 제2조(정의) "공무국외출장"이란 공사 임직원이 공무 수행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로 출장하는 것을 말한다. 다만, 교육규정에 따른 정규프로그램은 제외한다. <개정 2013.3.29>
- 제3조(허가)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임직원의 공무국외출장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장이 허가한다. <개정 2021.2.24.>
- 제3조의 2(출장의 제한)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초청하는 출장은 제한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한다. <신설 2013.3.29>
 - 1. 공공기관에서 출장동행을 의뢰하는 경우
 - 2. 해외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- 3. 공사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심사위원회에서 출장이 필요

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- 제4조(총괄) 인사담당부서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며 공 무국외출장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. 다만, 공무국외출장 관련 계획수 립 및 예산집행 등의 업무는 당해 공무국외출장을 목적으로 하는 부서에서 행한다. <개정 2013.3.29>
- 제5조(심사위원회의 설치·운영) ①공사는 공무국외출장에 관련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(이하 "심사위원회")를 설치·운영한다.
 - ②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담당부서가 속하는 본부의 장으로 하고, 위원은 감사담당부서 · 기획담당부서 · 인사담당부서가 각각 속하는 실·국의 장으로 한다.
 - ③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인사담당부서의 장이 된다.
 - ④출장자 본인, 출장자 소속부서 간부·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할 수 없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하며 위원장은 대체위원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 <신설 2013.3.29>
- 제6조(심사위원회의 심사) ①심사위원회의 심사는 제3조의 허가 이전에 행한다.
 - ②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3.3.29>
 - 1.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 하는 공무국외출장

- 2. 업무의 벤치마킹을 위한 각종 시찰·견학·참관·자료수집, 해외 광고제 참관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 계획
- 3. 직원에 대한 포상·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 계획
- 4. 공사가 주관하는 10명 이상(공사 외부인원을 제외한다)의 단체 공무국외출장
- 5. 그 밖에 사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
- ③공무국외출장 예정자는 별표 1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·심사신청을 하여야 한다.
- ④심사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예정자에 대하여 별표 2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심사한다. <개정 2013.3.29>
- ⑤긴급한 공무국외출장 실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 심사를 할 수 없다. <신설 2013.3.29>
- 제7조(국외여비 예산의 편성) 공무국외출장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13.3.29>
- 제7조의 2(외부기관의 경비부담 범위)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이 부담하는 경비는 여비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로 한다. <신설 2013.3.29>
- 제7조의 3(대행업체 선정) 공사가 주관하는 공무국외출장 경비가 2천 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따라 대행업체를 선정

- 해야 한다. 다만, 회계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 <신설 2013.3.29>
- 제8조(여비지급) ①공무국외출장자에 대한 항공운임을+ 지급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공권 발매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법인카 드로 결제해야 한다. <개정 2013.3.29>
 - ②항공운임 이외의 여비의 지급기준은 여비규정에 의한다. <개정 2013.3.29>
- 제9조(품위유지)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사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현지의 규범·관습·공중도덕 등을 존중하며,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.
- 제10조(결과보고서 등 제출 및 공개) ①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별표 3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사장과 인 사담당부서에게 제출한다. 결과보고서에는 항공권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.
 - ②인사담당부서에서는 공무국외출장자의 귀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등록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항공권 사본 등 증빙자료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9>
- 제11조(사장과 감사의 공무 국외출장) 사장과 감사는 공무국외출장시목적, 일정, 관련예산 등 주요사항을 주무부처와 기획재정부에 통보해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3.3.29.>

이 규정은 2013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..

부 칙<2021.2.24.>

이 규정은 202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(별표 1)

공무국외출장계획서

1. 출장개요

출장목적								
출장동기 및 배경								
출장기간		~ .	(일간	1)			
여 행 국								
		7			.) =)	당해출장	여 히	생 경 비
	소속	직 급	성명 성별 연령 담당업	담당업무	금 액	부담기관		
여 행 자								
동행기관명 및 인원								

2. 출장일정

월일시 (요일)	출발지	도착지	방문기관	업무수행내용	접촉예정인물 (직책포함)
	서울				
		서울			

※ 출장일정은 **시간대별로 작성**하며,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 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

3. 출장경비 및 관련 예산

성 명 금액계	항 공 임		체 재 비	교육비	기 타		
78 78	금액 계	운 임	일 비	식 비	숙박비	<u> </u>	1 日
계							

관련 예산과목	총 편성액	기 집행 후 잔액 (당해 여비 집행전)
(국외업무여비 등)		

4. 사전 준비 내역

	1서의 검토 및 사전 분석 등	방문기관과의	사전협의 경과
자료명(일자) 자료 내용		방문기관에서 수집할 자료목록	질의할 내용

5. 출장 효과 및 출장결과 활용계획 등

(별표 2) <개정 2013.3.29>

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

구분	심사기준
출장목적 적합성	・표방하는 출장목적과 실질과의 부합 여부 ・시찰・견학・현장체험 등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낮은 단순 시찰 및 단순자료수집 목적의 국외출장은 가급적 제한
국외출장 필요성	 기왕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적이 있는지,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이 수행가능한지 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인터넷, e-mail, 전화 등으로 파악가능한지 여부 * 방문국의 담당자와 인터뷰가 필요한 경우에만 국외출장 승인 국외출장의 비용 대비 효과의 적정성
방문국과 방문기관 타당성	•출장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으로 제한 •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 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 기관을 추가한 사항이 없는지 * 중복·집중 방문으로 인하여 방문기관의 업무수행에 지 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함
출장일정 적합성	・출장일정의 구체성(시간대별 일정 수립 여부 등) ・전체일정 중 업무와 관련된 일정의 비중 ・공휴일을 포함한 경우 그 필요성 ・출장시기의 적정성(방문국의 관습・공휴일 등 고려 여부) ・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였는지 여부
참여자 적합성	 직무 관련자만 참여하였는지(출장자의 현 담당업무), 참여자간 업무분장이 명확한지(2인 이상일 경우 개인별 임무 부여) 귀국후 상당기간 해당업무를 담당할 사람인지 출장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에 한정하였는지 여부 * 개인이 지명되어 초청된 경우는 초청자의 경비부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억제

구분	심사기준
	• 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 지급되는 것인지
출장비용	·유관기관 등과의 출장 여부
적합성	·타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항공료·체제비 등의 과다 여부
160	* 자비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되지 않음
	·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, 단체, 개인과의 공무 또는 사적인
l ^ l	
출장의	국외출장인지 여부
공정성	·이해관계자 경비 부담시 허용범위 준수 여부
	・심사위원회 설치의 공정성 여부

(별표 3)

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

1. 출장개요

출장목적								
		, _				당해출장	બે શૃં	경 비
여 행 자	소속	직 급	성 명	성 별	연 령	담당업무	금 액	부담기관
	계							
동행기관명 및 인원								

2. 출장일정

월일시 (요일)	출발지	도착지	방문기관	담당업무	접촉예정인물 (직책포함)
	서울				
		서울			

※ 출장일정은 **시간대별로 작성**하며, 2인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

3. 업무수행내용

- 기관방문·시찰·견학 및 자료수집 내용 (면담자, 회의안건, 논의내용 등)
- ㅇ 국제회의 · 행사 등의 구체적 논의 및 활동내용 등

4. 출장성과 · 시사점 및 향후 업무 활용 계획

5. 출장경비 및 관련 예산

성 명	금액 계	항 오 임		체 재 비		교육비	기 타	
78 6	급액 세	운 임	일 비	식 비	숙박비	<u> </u>	7 4	
계								

6. 첨부자료

- ㅇ 항공권 사본, 여권의 출입국 관련부분 사본, 면담사진 등
- ㅇ 현지수집자료 등 기타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에 필요한 자료